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95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4.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주민자치과)
- 나. 상정의결
 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행정국장)

스크린파크골프장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이용료 규정을 마련하고, 보훈보상대상자 · 모범납세자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통해 공공복지를 향상하고, 강사에게 금품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함으로써 강사와 회원 사이에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스크린파크골프장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이용료 규정 마련(안 제8조 별표2)

- 나. 보훈보상대상자 체육시설 이용료 및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강좌의 수강료 50퍼센트 감면(안 제9조제1항제2호)
- 다. 모범납세자등 동북합문화센터 사용료 30퍼센트 감면
(안 제9조제2항제3호)
- 라. 강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 제한
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(2) 입법예고(2025. 8. 29. ~ 2025. 9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상민)

가. 조문 내용별 검토

가. 조문 내용별 검토

-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조문 배열 정비 및 구체화를 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) 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**안 제3조**는 “서울특별시 강남구” 를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,
- **안 제9조**는 “수강료 등의 감면” 으로 제목을 규정하고 있는 바, 조문 제목을 규정할 때는 편의를 위한 약칭보다는, 내용의 정확성과 명료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규의 신뢰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므로, “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” 과 같이 조문에서 규정하는 모든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목에 포함하여 내용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문 제목만으로도 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, 별도의 약칭 없이도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해지며, **안 제10조**의 2의 “대관료의 감면” 규정과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**안 제9조의2** “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” 과 관련하여 **안 제9조**와 동일하게 “수강료 등의 반환” 이 아닌 “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”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**동 조제2호**에 “수강생이 자발적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”, “건물 리모델링 등” 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 용어라기보다 일상적인 구어체에 가까우며, 특히 기준없는 수강생의 자발적 수강의 포기에 **도 환불을 해주는 경우**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염려와 해석상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, 사용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계약 해지 및 환불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¹⁾²⁾³⁾

1)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.

1. 수강 신청 후 강의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
2. 수강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월 이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 환불
3. 공연시설 등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 3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. 단,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전액 환불.
4.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불

○ **안 제13조제4호**는 동북합문화센터 강사는 강남구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맺어 강남구 소속인 스포츠 강사들은 「청탁금지법」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, 일반적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 강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남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제공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.

- 또한, 금품 수수 행위는 제공하는 사람의 잘못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므로, 프로그램 강사 계약서에 “강사는 수강생에게 교육용품의 구매 강요나 부당한 부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, 수강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 사례를 제공받을 수 없다.” 라

반환사유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	반환사유 발생 시	납부한 사용료 전액
시설의 안전관리,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		
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		
2)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	프로그램(시설) 이용 전	납부한 이용료 전액
	총 이용 기간의 1/3 경과 전	납부한 이용료의 2/3 해당액
	총 이용 기간의 1/2 경과 전	납부한 이용료의 1/2 해당액
	총 이용 기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
3) - **체육프로그램**

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, 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의거하여 환불

· 개시일 이전 환불금액 = 전액환급

· 개시일 이후 환불금액 =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 +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

- **교육문화 프로그램**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,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평생교육시설운영법에 의거하여 환불

· 개시일 1/3 경과전 환불금액 = 수강료의 2/3 해당하는 금액

· 개시일 1/2 경과전 환불금액 = 1/2 해당하는 금액

· 개시일 1/2 경과후 환불금액 = 미환급

는 조항을 명시하여,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강사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.

나.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이용료 규정 신설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명확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비 및 내용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,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타당하며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규정의 삭제 검토, 조문 제목의 명확성 확보, 반환 기준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및 환불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일부 조항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관계법령 발췌서

□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

제9조의2(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)

-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·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(이하 "전자조달시스템등"이라 한다)을 활용하여야 한다. [개정 2019.11.26] [[시행일 2020.5.27]]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·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·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[신설 2019.11.26] [[시행일 2020.5.27]]
-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북합문화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북합문화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